

**「2026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2025. 12.

조달청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 사업” 혹은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주관기관”이란 종합지원사업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조달청을 말한다.
- ② “관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종합지원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선정한 기관으로서, 참여기업 선정·평가, 사업 운영·관리, 정산, 사업비 집행, 사후 관리 등의 업무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③ “참여기업”이란 종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④ “평가위원회”란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소정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 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 ⑤ “수행기관”이란 참여기업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⑥ “서비스”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물품, 용역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빙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⑦ “서비스 비용”은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동안 수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주관기관이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2. “자기부담금”은 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수행 경비를 말한다.
- ⑧ “정산”이란 참여기업이 지출한 서비스 비용을 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관기관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⑨ “협약”이란 참여기업의 의무와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참여기업 간 상호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 ⑩ “서비스사용계획서(이하 “사용계획서”라 한다)란 협약 체결 전 관리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참여기업이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사용기간, 금액, 사용 계획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서를 말한다.
- ⑪ “특수관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2.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또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3.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2호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2호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⑫ “특수이해관계인”이란 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기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세부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2. 참여기업 모집, 평가, 선정 등을 위한 지원 업무
3.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4. 참여기업과의 협약체결, 변경, 해지 등 사업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참여기업 상시점검, 중간점검(현장점검 포함), 최종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참여기업의 정산, 지원금 집행 지원 및 회계 법인을 통한 서류 검증
7. 참여기업 민원, 대응 지원 및 문의 대응
8. 참여기업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
9. 참여기업의 사업 결과보고서 총괄 검토·점검·평가
10.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사전검토, 부정사용 점검 지원
11. 참여기업 신청서류, 정산서류 등 서류작성 지원 및 보완
12.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업 교육, 매뉴얼 제작
13.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성과 조사·평가, 개선사항 도출 등 사업 개선 지원
14.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 가이드라인 및 협약, 관리기관이 제시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숙지와 이행
2. 사용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3. 사업 운영·관리 및 후속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등 관리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4. 사용계획서 상의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기관에 서면, 유선 등을 통한 신속한 공유
5. 서비스 기간 내 정산에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제출
6.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이행
7.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의 이수
8. 운영 가이드라인, 공고, 협약 등에서 정한 청렴의무의 준수
9. 서비스 품질관리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기관 변경 등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10. 만족도조사 및 사업 실적, 통계 분석, 향후 사업개선을 위한 자료의 제출
11. 기타 수행기관 변경 등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제6조(참여기업 모집공고) ① 주관기관은 해외조달정보센터에 모집공고를 등록하여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관리기관은 홍보, 서류검토 등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과정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에 따라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선정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지원대상과 자격, 우대 대상
3.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원내용
4. 신청절차, 방법, 신청기간
5.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 참여기업 선정방법 등
6. 기타 사업추진 필요한 사항

⑤ 관리기관은 참여기업 모집, 홍보 등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종합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기업
2. 최근 1년 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1. 휴·폐업 중이거나, 부도, 파산이 확인된 기업
2.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4.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5.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6.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7. 이전 종합지원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아 신규 참여가 제한된 기업
8.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9. 영위 업종 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10.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조회 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8조(지원범위) ①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신청한 서비스 중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서비스 분야, 내용에 한해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 가능 여부, 지급 가능 기간, 기업별·서비스별 지원한도와 자기부담금 등은 매년 시행계획 및 사업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서비스 수행능력 및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사업의 신청) ① 참여기업은 종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공고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가신청서
2.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중소기업확인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8. 기타 모집공고에서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 및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선정)** ①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검토·보완한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대상을 확정된 후 참여기업 선정에 위한 평가, 선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선정에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와 해외조달시장 간 연관성, 비용의 합리성, 기업 수출역량, 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지원 효과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이 신청한 서비스별 지원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관리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이 지정한 수행기관의 자격, 역량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업에 수행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점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지역 업체 비율, 재참여 기업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⑦ 주관기관은 선정 기업 중 선정 취소, 신청 철회,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⑧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예비기업 선정 명단을 확정된 후,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선정 취소, 중도 포기 등으로 참여기업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참여기업 모집이 미달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의 예비 기업부터 참여의사 등을 확인 후 참여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 ⑩ 제8항에 따라 참여기업을 확정된 이후에도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11조(선정 제외) 참여기업 및 예비기업 선정 명단을 확정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종합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자료 포함)가 거짓이거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된 경우
2.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기관 변경, 서비스 금액 조정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계획서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7조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공고에서 정한 결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즉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참여기업에게 사용계획서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은 관리기간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계획서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용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 체결 시 서비스비용의 산출 및 집행 기준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계획의 변경) ①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에 제출한 사용계획서 상의 서비스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미리 공문으로 변경 내용, 사유, 이용 계획 등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의 평가절차를 준용하여 사업 목적 달성, 일정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변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변경, 일정 변경, 일부 금액 조정 등 서비스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사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참여기업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수정한 후 주관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사업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서비스 미사용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6조 및 운영가이드라인,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보고서 미제출 또는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7. 참가신청서 및 서비스사용 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점검·평가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9.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점검 및 최종평가) ① 관리기관은 상시점검, 중간점검, 최종평가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실태 점검, 사업성과 확인, 참여기업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업방문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점검 이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과정에서 참여기업에 수행기관 및 서비스 이용 계약 정보, 진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참여기업이 협약 내용, 운영가이드라인, 서비스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서비스 사용 후 서비스 사용 내역, 활용결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비스 활용 내역, 서비스 비용 지출현황, 성과(서비스를 활용한 수출 실적 등),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 자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기업에 보완,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부정행위 또는 협약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관기관에 보고 후 그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의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중간점검 및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정산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서비스 사용기간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에 필요한 서류 및 각종 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2. 참여기업이 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제출 서류
3. 그 외 사용을 증빙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운영 가이드라인, 사용계획서,

- 관리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서비스비용에 대한 정산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지원금액 등을 참여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3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⑥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을 통해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주관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주관기관은 협약 또는 운영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정산을 신청한 서비스 중 서비스 사용계획서에 따라 지출되고, 증빙이 가능한 서비스 비용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빙이 미흡하거나, 주관기관이 승인한 서비스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계획과 상이한 지출 항목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지급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빙이 확인된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 ⑨ 주관기관은 정산을 통해 확정된 지원금을 e-나라도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교부한다.
 - ⑩ 주관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17조(결과 보고)** ① 참여기업은 사용계획서 상 서비스 사용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종합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과 보고를 제출받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3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3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참여기업은 관리기관을 통해 보고서 확정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가 사업 목적 및 사용 계획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및 홍보) ① 관리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주관기관에 사업 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결과에는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지원사업 성과평가·분석,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홍보 계획, 향후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성과평가·분석, 만족도 조사, 홍보,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 기간 중 또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여기업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의 직원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재조치) ①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지원금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지원 받은 서비스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서비스로 확인된 경우(중복 지원)

3.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산 결과 정부보조금 잔액이 지급 예정액의 15%를 초과한 경우

4. 참여기업이 운영가이드라인, 협약, 사업공고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참여기업이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청렴서약서(별지 제4호) 상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참여기업이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참여기업의 사유로 사용계획서 및 운영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시점에 정산을 요청한 경우

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검토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려는 경우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의 조사,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 검토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지원사업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한 후 이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재조치를 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가 제재조치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정도,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지원사업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와 별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기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공고, 업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청기업 기초자료

기업명				
기업 수출역량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및 준비정도, 그간의 노력(수출전담 부서, 해외지사, 현지파트너 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수출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수출품목, 수출액, 수출국 등)을 기술			
해외인증	해외 인증은 UL, CE, CCC 등 제품에 대한 해외 인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제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단, 등록이 완료된 건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AI관련 제품 수출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하는 경우(√), 단, 해당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제품의 수출이력, 수출가능성,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5, '26년도 타기관 지원사업 선정 이력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지자체 등)	운영기관	지원사업명	수혜서비스	지원기간
	※ 지원사업명은 공고서에 명시된 사업명으로 정확히 기재 요망			
그 외 가점 사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 선택(√) <input type="checkbox"/>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input type="checkbox"/> 혁신제품 보유기업 <input type="checkbox"/> 우수제품 보유기업 <input type="checkbox"/> 혁신형 중소기업			

※ 수출실적, 해외인증, 국제지식재산권 항목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평가하지 않음

2-1. 신청서비스 기초자료

※신청한 서비스 별로 작성

기업명			
서비스명			
수행기관명		서비스 이용기간	
비교견적	<input type="checkbox"/> 2개사 이상, <input type="checkbox"/> 1개사,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개사 이상 미제출 사유 :)		
신청서비스의 내용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비용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해외조달시장과의 연관성 및 지원 필요성	신청한 서비스와 목표 해외조달시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비스 활용계획	신청 서비스의 활용 계획, 목적, 사용일정과 서비스 산출물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상되는 효과	신청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수출, 바이어 매칭,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조달청 귀중

본인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조달청·**운영보조기관**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3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p>조회대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 조달청 관계기관(운영보조기관, 지자체 등),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p>조회 목적</p>	<p>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p>
<p>조회할 기업(신용)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조달청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TNET, 산업부 등 공공기관, 수행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등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HS코드,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운송방법, 거래구분, 화주, 수리일, 품목명, 수출신고번호),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p>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p>	<p>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조달청·운영보조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p>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조달청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운영보조기관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KINET ▶ 운영보조기관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p>제공받는 자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조달청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행사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 운영보조기관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p>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 기타 신용정보(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 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KINET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 조달청 관계기관,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행사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p>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p>	<p>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고용에 관한 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목적국, 수출액, 국가별 수출액, HS코드, 품목명 등), 간접수출에 관한 거래내역(공급기업, 공급액, HS코드, 품목명, 문서번호, 발급일) ▶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 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p>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조달청·운영보조기관에 제공하여, 조달청·한국 운영보조기관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조달청·운영보조기관 홈페이지와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조달청·운영보조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p>조달청·운영보조기관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5. KTNET 무역정보 활용·제공 동의

<p>제공·조회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 이용시 거래지원 및 편의제공 ▶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등 거래선 확대 지원 ▶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무역사기 방지를 위한 공정 무역환경 조성 등
<p>무역정보 활용·제공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취급품목 or 품목별 업체정보 * 취급품목(품목분류번호, 품명), 업체정보(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 업체별 직·간접 수출입 실적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 ▶ 기타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전자무역문서 항목별 정보
<p>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p>	<p>KTNET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기간</p>
<p>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금융·보증·보험기관(ex. 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무역진흥기관 : 무역관련 행정기관, 무역협회,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 국내외 바이어(품목별 업체정보에 한함) ▶ 공공/민간 연구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기타 상기 무역정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 자
<p>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별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조달청 귀중

본인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조달청·**운영보조기관**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조달청·**운영보조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시어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조달청· 운영보조기관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지자체, 지역혁신기관) ▶ 조달청· 운영보조기관 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관련 중진공 주관 사업 안내,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위와 같이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자필성명 또는 개인인감)

〈 청렴서약서 〉

1. 참여기업000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운영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행하겠으며,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참여기업000은 사업기간 내에 <부정행위 유형별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 운영 가이드라인,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유형별 체크리스트>

연번	부정행위 유형	해당여부(√)	비고
①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 이외의 제3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수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가장한 경우 (하청의뢰를 목적으로 수행기관에 제3자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서비스 금액을 부풀려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허위 증빙자료 제출하거나, 참여기업이 보유한 협약 체결 전 보유한 자료를 서비스 결과물로 속여 제출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특수관계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격없는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정산서류 제출 시 타 지원사업에 제출한 결과물 및 증빙자료를 재활용하여 제출하거나, 타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서비스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수행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수입으로 인한 혜택, 이익, 대가 등 일체의 명목으로 금원,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기타 보조금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인)

조달청장

관리기관 · 000 업무협약서

관리기관과 000(참여기업)(이하 “협약당사자” 라 한다.)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조달기업의 성공적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관리기관**과 참여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업의 의무)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이용)** 참여기업은 서비스 이용 시 운영 가이드라인과 협약 체결 전 **관리기관**과 상호 합의한 “서비스 사용계획서”에 명시된 일정, 계획,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중 또는 사업기간 이후에도 관리기관이 종합지원사업의 관리, 감독 및 참여기업 지원, 성과평가·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수출실적자료,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통보의무)** 참여기업은 종합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사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결과보고) 참여기업은 서비스 이용 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운영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 및 “서비스 사용계획서”, “사업공고” 상에 명시된 일정, 절차를 준수하여 조달연원에 종합지원사업 결과보고서·산출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후협력) 협약당사자는 종합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후속지원 및 사업의 홍보·확산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해석)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협약의 변경·해약, 제재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사용계획서, 사업공고를 따르며, 본 협약 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제4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업무협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유효하다.

제5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6조(협약의 증명)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협약 당사자가 상호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관리기관명

참여기업명

관리기관 대표 날인

참여기관 대표 날인

〈참여기업 · 수행기관 서약서〉

1. 참여기업000, 수행기관000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가이드라인·정산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정산 기준을 숙지하며, 서비스활용 및 제공 과정에서 상기 기준에 맞게 진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참여기업000, 수행기관000은 서비스활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서비스활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또한,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참여기업000, 수행기관000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사전 고지할 것을 확약하며, 아울러 서비스 활용 및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관리기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②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해관계인(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이 합하여 또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또는 특수 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③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위 ②항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위 ②항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2026년 x월 x일

참여기업 기관로고

수행기관 기관로고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7] 종합지원사업 서비스 사용계획서 서식

<종합지원사업 서비스 사용계획서>			
참여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명			
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비용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의 내용	신청한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비용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비스 활용계획	신청 서비스의 활용 계획, 목적, 사용일정과 서비스 산출물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상되는 효과	신청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수출, 바이어 매칭,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성과지표 기재 예) CE인증, LOI	성과지표 측정 방법 기재 예) 인증서 제출, LOI 제출	목표 측정치 기재 예) 2건(100%)
서비스 이용 후 제출할 산출물, 정산 증빙자료	서비스 이용 완료 후 관리기관에 제출할 산출물 및 증빙자료, 정산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8] 종합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종합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참여기업명		수행기관명 (서비스제공업체)	
서비스 명			
서비스 이용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협약체결일	2025년 월 일

소요예산 (VAT별도)	서비스비용 금액			(원)
	정산 요청 금액			(원)
지원받은 서비스의 내용	지원받은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서비스 산출물 활용 결과	서비스 산출물 활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시제품을 활용하여 전시회 참여, 홍보, 실증 등에 활용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달성치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성과지표 기재 예) CE인증, LOI	성과지표 측정 방법 기재 예) 인증서 제출, LOI 제출	목표 달성치 기재 예) LOI 2건	
향후 활용계획	지원받은 서비스 산출물의 향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비스 결과물	서비스 결과물 목록을 간략히 기술 (서비스 결과물, 사진, 문서 등은 붙임 파일로 제시)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검토 후 해당내용에 대해 정산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관리기관은 필요 시 결과보고서에 관한 수정 및 관련 상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가능

[별표 1]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기준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기준>

① 관리기관 서류심사 : 기본 신청자격 및 결격대상 여부 검토

평가영역	평가지표	제출서류	평가방법
경영상태 <협약체결 전까지 확인>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중소기업 확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B-이상)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적합 /부적합
조달등록	조달기업 여부 부정당제재 여부	별도 제출 불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적합 /부적합
중복수혜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수혜 여부	별도 제출 불필요 (KOTRA-중진공 협조)	적합 /부적합

※ 경영상태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이후로 조정 가능

② 평가위원회 심사 : 서비스 별 적정성, 타당성 심사

- 적정성평가 : 서비스별 지원 적정 여부를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 타당성 평가 진행

평가지표	지표설명	평가방법
해외조달시장 연관성	▪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인가?	적합 /부적합
서비스비용 합리성	▪ 제안된 서비스 항목과 비용이 적정하고, 증빙이 가능한 서비스인가? ※ 참여기업은 제안 서비스 항목에 대해 비교견적 내용을 함께 제출	적합 /부적합

- 타당성평가 : 기업역량, 서비스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

평가지표	지표설명	배점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 해외조달시장에 진출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 신속한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평가	30
활용계획의 적정성	▪ 해당 서비스 활용 계획, 방법·비용 등의 적정성을 평가 (신청 서비스의 사용계획, 방법 등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30
기업 수출역량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수출 준비도 평가 (최근 3년 누적 수출액 10만불 이상, 해외지재권 및 인증 보유 시 적합 등급 이상으로 평가)	30
수출과의 직접 연관정도	▪ 수출 과정에서 신청 서비스의 직접 활용 정도 및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	10
그 외 가점 우대	▪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 합산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A등급)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B등급) - 해외실증 시범사업 선정기업(+5점) - 우수 혁신제품 보유 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 직전년도 중도 포기기업, 서비스 미사용 및 이용잔액 15% 이상 기업	+5 +3 +5 +3 +1 -5

[별표 2]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심사서

	평가번호	1					
종합지원사업 선정 심사서							
접수번호	24-1-1	기업명	A기업				
		서비스명					
타당성 평가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	30~26	25~21	20~16	15~11	10~1	
	2. 활용계획의 적정성	30~26	25~21	20~16	15~11	10~1	
	3. 기업 수출역량	30~26	25~21	20~16	15~11	10~1	
4. 수출과의 직접 연관 정도	10~9	8~7	6~5	4~3	2~1		
소 계							
가감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A등급 +5점, B등급 +3점)						
	해외실증 시범사업 선정기업(+5점)						
	혁신제품, 우수제품 보유 기업(+3점)						
	혁신형 중소기업(+1점)						
직전년도 중도 포기기업, 서비스 미사용 및 이용잔액 15% 이상 기업(-5점)							
총점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		서비스 비용 검토			
	1. 해외조달 연관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비용 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			
2. 서비스비용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SI 연관성	수출가능성 높은 SI 관련 제품 보유 여부 및 신청서비스와의 연관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종합의견	신청기업 및 서비스의 심사 분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소속: OO소속		직위: 과장		성명: 홍길동 (인)			